

“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수신처 참조
(경유)

참 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부서의 장

제 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신인도 조회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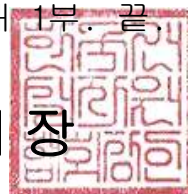


1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 관할 소재지에서 허가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(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제외) 표창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, 행정처분,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등의 현황을 조사 중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불임의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12.22(금)까지 우리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2. 아울러 신인도 조회 양식은 본 협회 ‘홈페이지(www.koras.org)-자료마당-서식다운로드’ 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업무 심사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 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불임 '24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신인도 조회안내 1부. 끝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수신처 : 서울시(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), 부산광역시(중구, 서구, 동구, 영도구, 부산진구, 동래구, 남구, 북구, 해운대구, 사하구, 금정구, 강서구, 연제구, 수영구, 사상구, 기장군), 대구광역시(중구,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수성구, 달서구, 달성군), 인천광역시(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구, 강화군, 옹진군), 광주광역시(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), 대전광역시(중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, 대덕구), 울산광역시(중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울주군)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(수원시, 성남시, 의정부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광택시, 동두천시, 안산시, 고양시, 과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오산시, 시흥시, 군포시, 의왕시, 하남시, 용인시, 파주시, 이천시, 안성시, 김포시, 화성시, 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여주시, 연천군, 가평군, 양평군), 강원도(춘천시, 원주시, 강릉시, 동해시, 태백시, 속초시, 삼척시, 홍천군, 횡성군,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,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), 충청북도(청주시, 충주시, 제천시,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, 진천군, 괴산군, 음성군, 단양군, 증평군), 충청남도(천안시, 공주시, 당진시, 보령시, 아산시, 서산시, 논산시, 계룡시, 금산군,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), 전라북도(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, 정읍시, 남원시, 김제시, 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고창군, 부안군), 전라남도(목포시, 여수시, 순천시, 나주시, 광양시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고흥군, 보성군, 화순군, 장흥군, 강진군, 해남군, 영암군, 무안군, 함평군, 영광군, 장성군, 완도군, 진도군, 신안군), 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김천시, 안동시, 구미시, 영주시, 영천시, 상주시, 문경시, 경산시, 군위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 청도군,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, 예천군, 봉화군, 울진군, 울릉군), 경상남도(진주시, 통영시, 사천시, 김해시, 밀양시, 거제시, 양산시, 의령군, 함안군, 창녕군, 고성군, 남해군, 하동군, 산청군, 함양군, 거창군, 함천군) 창원시(의창구, 성산구, 마산합포구, 마산회원구, 진해구), 제주특별자치도(제주시, 서귀포시) 이상 233개 지자체장

전결

담당 **고요한**

센터장 **조대연**

사무총장 **조정환**

협조자

시행 정보관리 - 612 호 (2023.12.13) 접수

우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일동제약빌딩 3층 / www.koras.org

전화 02-3476-7787 전송 02-3476-8464 / koras00@naver.com / 공개

'24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신인도 조회안내

- **관련근거** :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

-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(비산먼지·침출수·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.)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

- 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- **조회대상** :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

- **신인도 조회서 작성 유의사항**

- 관할 지역 내 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

- 별첨 양식 ①의 조회기관 일반사항만 작성 후 회신

- 관할 지역 내 중간처리업체가 있는 경우(수집운반업체 제외)

- 별첨 양식①~③ 모두 기재 후 회신

※ 표창 및 행정처분 등 조회사항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 경우 별첨양식 ③-가, ③-나 및 ③-다 양식에 '해당사항 없음' 기재 후 회신

- **회신방법** : '23.12.22(금)까지 문서24 또는 팩스(02-3476-8464) 송부

※ 담당자 : 정보관리센터 고요한, ☎02-2046-5951)

별첨 '24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신인도 조회서 1부. 끝.